

Ⅲ. 出版物에 의한 名譽毀損 事例

공연히 事實을 摘示하여 他人의 名譽를 毀損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2. 7. 14.자 명령(82고약6184),
1983. 1. 28.자 명령(83고약201)

事實概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는 法院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고소인 박 씨가 제출한 피고인 탁 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탁 은 고소인 박 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에 공연히 事實을 적시하여 박 의 名譽를 훼손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소인 박 씨는 월간지 聖別 5월호(1981년 5월 15일자)에 『그리스도편인가, 적 그리스도편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와 聖別 6월호(1982년 6월 15일자)에 『교포 교회에 침투하는 통일교』 제하의 기사가 각각 게재되자, 聖別 발행인이자 필자인 탁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박 씨는 『교포사회에 침투하는 통일교』 제하의 기사가 聖別 6월호(1982년 6월 15일자)에 게재되자, 聖別 발행인이자 필자인 탁 씨를 상대로 1982년 7월 10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5호 120면 참조).

중재결과, 탁 씨는 聖別에 게재된 記事가 사실대로 쓴 것이며, 기독교계의 公益을 위한 기사이기 때문에, 박 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약식명령 I

사 건 : 82고약618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피 고 인 : 탁

생년월일 :

직 업 :

주 거 : 서울

본 적 : 서울

주형과 부수처분 : 피고인을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37조, 제3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82. 7. 14.

판사 최 중 태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으로 종사하면서 「성별」이라는 종교잡지 월간지를 발행하는 자인 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총회장 을 비방할 목적으로,

1. 1981. 5. 15.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소재 피고인 경영 종교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박 이 통일교의 문 초청만찬회에 참석하고 떠블유. 씨. 씨. (W. C. C.; 세계선교협의회), 케이. 엔. 씨. 씨 (K. N. C. C.; 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에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하여 있다고 비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발행 종교잡지 「성별」이라는 출판물 「긴급발언대」란에 『그리스도편인가 적그리스도편인가』라는 제목을 달고 『자칭 호헌총회장 박 씨의 망언을 듣고』라는 부제목 아래 「한국교계에 패 거물급(?)으로 알려진 자칭 호헌과 박 목사…문 교주가 이단의 괴수라는 것쯤은 다 알 수 있을텐데 반공 운운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박씨는...이번에는 계룡산 새일파의 계통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자금줄을 타고 활동하고...교계에서는 항간에 한국기독교멸공협회의 운영자금이 아리송하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고 대구지역에서는 큰 물의가 일어나기도 했다...반공을 내세워 밥벌이나 하자던가 자기의 기형적인 애국심을 만족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게재하고

2. 1980. 12. 7.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2 소재 공소의 경영 한국복음신보사 발행 출판물인 동일자 한국신복음신보 발언대란에 『문교주 초청만찬회를 보고』라는 제목 아래 「세계적인 문제야로 등장한 통일교회의 교주인 문 씨의 초청만찬회가 열린 것이다...과거 교계에서 관록을 자랑하던 분들이 문교주의 좌우에 둘러리적으로 앉아 있었다...

예장 호헌총회장인 박 목사가...끼어 있었다...

이날 참석한...왜 뚝뚝하게 머리를 못들고서 팔려고 내다 놓은 시골닭처럼 눈치만 살피고 계면쩍어 했는가...」라고 게재하고

3. 1981. 12. 15. 위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성별」잡지 권두언란에 「...그 첫번 타자는 고소제기를 많이 하기로 이름난 호헌총회장 박 씨가 본 편집인이 쓴 글을 트집잡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사회정의를 구현한다면 오히려 조사를 해봐서 상습적인 고소를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보호감호소라도 보내어 순화교육을 시켜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게재하여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박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약식명령 II

사 건 : 83고약2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피 고 인 : 탁

생년월일 :

직 업 :

주 거 : 서울

본 적 : 서울

주형과 부수처분 : 피고인을 벌금 100,000(일십만)원에 처한다.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형법제309조 1항(벌금형선택)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 4조 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83. 1. 28.

판사 임 승 순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으로 종사하면서 「성별」이라는 종교월간잡지 발행인 겸 편집인 자인 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총회장 박 을 비방할 목적으로 1982. 6. 15.자 발행의 동잡지 6호에 『교포교회에 침투하는 통일교』라는 제목으로 해외집회기를 게재하면서 게재문 64정과 65정에 「이번 출국에 있어서 방해공작을 한 자는 박병훈 목사였다. 그자는 통일교집회에 참석했기에 충고를 했더니 필자를 걸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해 놓고 수사당국에 출국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으니 중대한 국사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님은 물론 해외 도피 우려도 없는 필자를 해외에 못나가게 하면 결국 통일교 밖에 이익을 볼 집단이 없는데 박씨는 통일교 문 과 나란히 자리 잡고 나더니 통일교편인지 기성교회편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더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는 N. C. C.를 용공집단이라고 몰아 부쳤는데 그렇다면 박씨의 아들이 미국의 예장 통합측 교단에 소속돼 있고 그 딸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다 하니 박씨가 N. C. C.를 용공집단이라고 막 욕하는 저의를 알 길이 없다. 항상 필자의 출국길에는 사탄의 장난이 뒤따를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은 제2차 출국시에도 권신찬 집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제4차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필자의 사무실 관할 파출소와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서 박씨가 찾아와 탁 이를 보면 즉시 잡아달라고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하니, 명색이 목사라는 이가 할 일이 없어 파출소나 찾아 다니면서 사람 잡아달라고 하니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느낌이 든다」라고 게재하여 그 경 전국의 구독자에게 배포하여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박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없는 사진을 제공,
月刊誌에 게재케 한 것은 사진 속의
인물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3. 29.자 판결(88고단8891)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7. 14.자 판결(89노2338)

대법원 1989. 11. 14.자 판결(89도1744)

事實概要

서울형사지방법원 민경식 판사는 1989년 3월 29일 가짜 광주사태 관련사진을 「월간中央」에 제공하여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1969년 6월의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공수부대원들이 사살된 간첩들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한 사진을 광주사태현장 사진인 것처럼 속여 「월간中央」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월간中央」은 1988년 3월호에 『사진으로 본 광주사태』란 제목의 화보를 실으면서 이 사진을 「시신 앞에 서 있는 공수부대원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했는데, TV로 생방송되는 「5공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진이 광주사태관련 증거물로 제시되자 사진에 등장한 공수부대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장씨를 고발했었다.

담당 판사는 「문제의 사진이 월간中央에 게재될 경우 사진에 나타난 공수부대원들이 마치 광주시민들을 사살하고 그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장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2심(서울형사지방법원 제6

부·재판장 이영규 부장판사)에서는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제1부·재판장 윤관 대법관)에서는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審 判決文

사 건 : 88고단889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장

주거

본적

검 사 : 이 용 삼

변 호 인 : 변호사 조 경 근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19 . 3. 8.경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및 육군병참학교에서 전, 후반기 교육훈련을 마치고 특전사령부로 차출되어 9여단 본부에 근무하다가 1980. 9월경부터 1981. 12. 24경 만기전역할 때까지 전 사편찬실에서 사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중앙일보사 출판국 여성중앙부에 전속되어 있으면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바, 1988. 2. 10경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중앙일보사 월간중앙부 사무실에서 월간중앙 담당 국장(대우)인 공소외 양 로부터 월간중앙 복간호(1983. 3월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이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특전사령부 근무 당시에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 6. 16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피해자 서 (당시 1공수 특전단 중위), 같은 윤 (같은 부대 중사), 같은 황 (같은 부대 중사), 같은 백 (같은 부대 중사) 등이 작전종료 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 놓고 그 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1매」를 위 사진이 위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에는 마치 위 피해자들이 1980.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출동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증거의 요지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양 이 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이 에 대한 피의
자 신문조서,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
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57조.

판사 민 경 식

327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3. 29. 선고 88고단8891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이 사건행위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의 적시 즉 피해자들의 특징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8. 2. 10.경 월간중앙 담당 국장대우인 공소외 양 로부터 월간중앙 복간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이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980. 9월 경부터 1981. 12. 24.경까지 특전사령부에 근무할 당시에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 6. 16.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피해자 등이 작전종료 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 놓고 그 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1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부 요원으로 광주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양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진이 위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 마치 위 피해자들이 1980.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출동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사살된 시민들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진의 입수경위에 대해 자신이 광주에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위 양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해자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각 증거 및 증인 의 당법정에서의 증언, 압수된 잡지(증제2호) 제410면 상단의 사진의 형상을 종합하면, 위 인정의 경위로 피고인이 위 양에게 이 사건 사진을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진을 교부받은 위 월간중앙측은 편집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보고

상황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대로 내지 말자는 의견을 모아 이 사건 사진 중 피해자들의 눈부위를 붉은 사선으로 지운 후 그 사진(이하 게재된 사진이라 한다.) 밑에 「시신앞에 서 있는 공수대원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월간중앙 1988. 3월호 중 「사진으로 보는 광주사태 그 현장」이라는 화보(위 잡지 403면 내지 410면 수록)의 마지막면 상단에 게재하고, 같은 해 2. 20.경 약 80,000부에 달하는 위 잡지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위 잡지에 게재된 사진을 일반독자들이 본다면 사진에 나와 있는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사진이 1969년도에 언론매체에 의하여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전사 전시관등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건 사진을 본 적이 있었던 사람 및 피해자들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게재된 사진을 보더라도 그 속의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을 알고 있거나 이 사건 사진을 본 적이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있어서 게재된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변호인은 비록 이 사건 사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게재된 사진을 보고 피해자들을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재된 사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뿐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등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게재된 사진에 의하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태범으로서 명예에 관한 나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할 것이고 게재된 사진을 보고 피해자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사살하였다는 등으로 생각하는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한 형량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결국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만이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7. 14.

재판장 판사 이 영 규
판사 손 태 호
판사 원 유 석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89도174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장

주거 경기

본적 서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사선) 조경근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7. 4. 선고, 89노233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8.
2. 10.경 월간중앙 담당 국장대우인 공소외 로부터 월간중앙 복간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이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980. 9월경부터 1981. 12. 24.경까지 특전사령부에 근무할 당시에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 6. 16.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피해자 서문구등이 작전종료 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 놓고 그 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1매」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부 요원으로 광주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진이 위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 마치 위 피해자들이 1980.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출동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사살된 시

민들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을 위 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사람의 성명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위 잡지에 게재된 사진을 일반독자들이 본다면 사진에 나와 있는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사진이 1969년도에 언론매체에 의하여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전사 전시관등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건 사진을 본 적이 있었던 사람 및 피해자들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게재된 사진을 보더라도 그 속의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있어서 게재된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1. 14.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안	우 만

PE 랩에 發癌物質이 함유된 것처럼 虛偽事實을 流布하여 日刊紙에서 이를 報道케 한 것은 被害者 會社의 販賣業務를 방해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0. 5. 16.자 판결(89고단3303)

事實概要

특정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발표한 대학교수가 법원에 의해 발표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東部지원 張相翼판사는 16일 식품포장재인 PE 랩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허위발표, (株)크린랩(대표)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돼 불구속 기소된 식품영양학과 高 교수(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高교수는 지난해 3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시판랩의 성분분석에 관한 보고」를 통해 「크린랩이 제조·판매하는 PE 랩에서 기형아를 출산케 하고 암을 유발하는 산화방지제 DLTP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크린랩으로부터 서울지검 東部지청에 고소당했었다.

張판사는 「高교수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발표가 日本식품위생연구소 화학시험부장 다쓰노 박사에게 의뢰, 분석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다쓰노 박사는 'PE 랩에서 DLTP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DLTP는 발암물질이 아니다'고 말해 高교수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判 決 文

사 건: 89고단3303 업무방해

피 고 인 : 고

주거 서울

본적 서울

검 사 : 이 용 훈

변 호 인 : 변호사 조 영 황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1975.경부터 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1989. 3. 1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20층에서 「국내외의 시판랩의 성분분석에 관한 보고」라는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이 초청한 국내외의 기자 다수, 국내시판랩 제조회사 5개 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임원 및 피의자의 제자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크린랩에서 제조, 판매하는 식품포장용 합성수지필름인 피.이랩(Poly Ethylene Wrap) 제품에 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규상 규격항목 중 재질시험에 산화방지제인 디.엘.티.피(Diraurylthiopropionate) 실험항목이 없고 디.엘.티.피는 발암성 또는 기형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아니며 같은 산화방지제인 일가녹스(Irganox) 1010, 1076과 비교하여 안전성에 관하여 우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국내외의 시판랩 9종류를 성분분석한 결과 위 피.이랩 제품에서 최기형성, 변이원성, 숙주경유 등 기형아의 원인이 되는 발암성 물질인 디.엘.티.피가 용출실험에서는 검출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재질실험에서는 나왔다. 이러한 산화방지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일가녹스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발표하여서 마치 피.이랩에서 디.엘.티.피가 검출되었고 디.엘.티.피는 기형아를 출산케 하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니 일가녹스로 대체하여야만 해독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같은 해 3. 17자 경향신문을 비롯한 석간신문과 같은 달 18자 서울신문을 비롯한 조간신문에 『피.이랩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제목으로 위 허위사실을 보도케 하여서 위 피해자 회사의 피.이랩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

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병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국립보건원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작성의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국내외 시판랩의 성분분석에 관한 보고사본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다카시 다쓰노(辰濃隆) 작성의 폴리에틸렌랩의 안전성에 관하여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신문사본 중 판시사실

법령의 적용 : 형법 제314조, 제31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1990. 5. 16.



판 사 장 상 익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에 의한 분쟁을 仲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에 의한 분쟁을 仲裁하여 합의를 성립시켜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서는 異議대상인 報道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訂正報道文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副本의 제출을 바랍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결과

* 중재신청기간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위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중재불성립으로 간주됩니다.

*** 중재기일에서의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중재기일에 중재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중재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당해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철회간주**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提起하여야 합니다.
- 중재불성립의 증명을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이를 교부해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 전국 14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言論仲裁委員會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7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仲裁業務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4개,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마산,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4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長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 중재부의 관할구역**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第16條 (訂正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公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日刊新聞 또는 通信의 경우에는 14日 이내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1月 이내에 書面으로 發行人이나 編輯人에게 訂正報道的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書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訂正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訂正報道的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利益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訂正報道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的 내용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訂正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7條 (言論仲裁委員會)** ① 訂正報道請求에 의한 紛争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侵害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7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文化公報部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를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며,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 第18條(仲裁節次등)** ① 訂正報道請求權이 있는 者 또는 그 상대방은 紛爭된 公表가 있는 날로부터 1月(第16條 第1項의 경우에는 訂正報道를 請求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은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그 仲裁部の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の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의 發行人에게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部の 長은 仲裁當事者나 利害關係者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出席要求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出席要求書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보며,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내용대로 訂正記事를 掲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정당한 사유로 出席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効力이 있다.

⑦ 仲裁은 仲裁申請이 接受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侵害事項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の 構成方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方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9條(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訂正報道請求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法院에 訂正報道請求의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の 管轄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 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訂正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訂正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有罪判決 이외의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發行人이나 編輯人에게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を 支給할 수 있다.

방송법

* 第41條(訂正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公表가 이루어진 후 14日 이내에 書面으로 放送局의 長이나 編成責任者에게 訂正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 訂正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訂正報道의 內容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訂正報道請求權의 行使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訂正報道의 內容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 행하는 訂正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 周波數에 의해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중재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출석요구서와 함께 2차 중재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피신청인이 법 제18조 제 5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중재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조서)** ① 법 제18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중재화해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관할중재부가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⑤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당해 중재부의 소속 중재위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재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하며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30조 (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31조 (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3조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무처 및 서울 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 732-6031~3 FAX. 730-9420
부산 중재부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5가 67(대교빌딩 501호)	(051) 463-3436
대구 중재부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31-9 (3·1빌딩 301호)	(053) 755-0108
광주 중재부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3가 1-11(광주은행본점 6층)	(062) 222-7033
경기 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81-6(법전빌딩 114호)	(0331) 211-9027
강원 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37-3	(0361) 3-2873
충북 중재부	충북 청주시 석교동 126-202(사법서사회관 3층)	(0431) 52-1250
충남 중재부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동 490 삼진빌딩 3층	(042) 257-0039
전북 중재부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50-2(대한생명보험빌딩 4층)	(0652) 88-0010
경남 중재부	경남 마산시 신포동 2가 5-4(삼익피아노건물 3층)	(0551) 42-1787
제주 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일도 1동 1424-2	(064) 22-3328

國內言論關係判例集 第1輯

(言論仲裁 통권36호 부록)

1990년 10월 20일 인쇄

1990년 10월 30일 발행

編者 言論仲裁委員會 調查研究室

發行 言 論 仲 裁 委 員 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전화 : 732-6031~3,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